
입 법 정 보

2017-16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5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5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5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6
5.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6
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7
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8
8.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9
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9
1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
11.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	10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11
13.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	11
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12
15.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3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14
1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5
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5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6
2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6
21.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방부)	17
22.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 (국방부)	18

2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
2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9
2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0
2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1
27.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1
2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2
2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2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24
3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4
32.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4
33.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5
34.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5
35.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5
3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5
37.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6
3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26
3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27
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27
4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28
4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28
4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28
4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29
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29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29
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30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30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31
5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31

5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1
5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32
5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33
5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33
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4
56.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34
5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4
58.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5
5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6
60.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6

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7. 24. • 마감일자 : 2017. 7. 26.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설에 따라 수산생물검역 및 정부합동민원실 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2명, 8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7. 7. 24. • 마감일자 : 2017. 9. 4.
- 농촌고령사회 다문화가정 증가 등 부부간 연령차가 커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고령농가의 보다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하여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7. 7. 24. • 마감일자 : 2017. 9. 4.
- 농촌고령사회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반영하여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고령농의 원활한 은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의 지원방식으로 인출형 및 경영이양형을 신설하고,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채권 회수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인출형 농지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19조의10제2항 제2호)
농지연금 가입자는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자금조달이 어려워 급한 목돈 등 필요시 대비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종신형 지급방식과 총 대출한도의 30% 이내 금액을 필요시 인출할 수 있는 방식을 결합한 지급방식 신설
- 나.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19조의10제2항 제4호)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경영이양형 상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고령농의
원활한 은퇴를 지원함으로써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의 채권회수 근거 신설(안 제19조의13제2항)

경영이양형 상품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가입자가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담보농지를 공사가 취득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
거 마련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7. 24. • 마감일자 : 2017. 9. 4.

○ 가.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주
차단위구획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주택단
지 내 전력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센트를 이용한 전체적인
충전상태를 통합 감시 또는 제어할 수 있도록 함.

5.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7. 24 • 마감일자 : 2017. 9. 4.

○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이 이루어지고, 출연된
누적 기본재산의 수익금과 해당 연도 출연금에 있는 경우에 출연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할 수 있음.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경영상황 악화와 저금리 기조로 인해
사업주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줄어들고 기금의 수익 저하로
근로조건 유지의 주요 수단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됨은 물론 기금법인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 중소기업 간 기업복지 격차를 완화시키
기 위하여 해당 사업(원청)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

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에 한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출연이 있을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누적된 기본재산의 사용 대상 ·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법인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으로 정함(안 제46조 제5항 신설).

다. 기금법인(원청)이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5년간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5항 신설).

라. 이때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금액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토록 함(안 제46조제5항 신설).

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7. 25. • 마감일자 : 2017. 7. 26.

○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 중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및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보임 직급을 검사 단수직급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그 보임 범위를 확대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청함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심사2국, 입국재심2과, 심사13과, 심사14과 및 심사15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8명(4급 1명, 5급 4명, 6급 17명, 7급 50명, 8급 73명, 9급

53명)을 증원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범의 단속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5명(6급 9명, 7급 14명, 8급 12명, 9급 10명),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2명, 7급 3명) 및 항만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4명(6급 10명, 7급 6명, 8급 5명, 9급 3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설되는 심사2과장, 입국재심2과장, 심사13과장, 심사14과장 및 심사 15과장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7. 25. ● 마감일자 : 2017. 7. 31.
-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의 수립과 책임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을 각각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지역 문화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해 문화기반정책관을 지역문화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2017. 8. 공포·시행 예정) 예정임에 따라 개편되는 조직의 부서별 사무분장을 정하는 한편, ‘출판인쇄산업과’를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하며, 총액인건비제팀으로 ‘미래문화전략팀’을 신설하고, 일부 소속기관 내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 나.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 개편(안 제14조 제15조 및 제50조)
 - 1) 체육정책실을 체육국으로 개편함에 따라 부서별 업무를 정함
 - 2) 국내·국제 관광 정책 기능으로 구성되었던 관광정책국 내 과별 사무분장을 관광정책·협력 및 관광산업 진흥 기능에 따라 재편함
 - 3) 평창올림픽 지원 기능의 강화를 위해 평창올림픽지원단에 보좌기관으로 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 및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을 설치함
- 다. 문화예술정책실 내 과별 사무분장 조정(안 제8조).
 - 1) 문화예술정책실 내 여가정책과, 지역전통문화과, 인문정신문화과, 박

- 물관정책과를 문화인문정책과, 전통문화과, 지역문화정책과, 문화기반과로 각각 개편하고 그에 따른 각 과별 사무분장을 조정함
- 라. 해외문화홍보원장 직무등급 조정 및 해외홍보기획관 사무 분장(안 제34조 및 제35조)
- 마. 총액인건비제로 미래문화전략팀 신설(안 제7조)

8.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7. 25. • 마감일자 : 2017. 9. 4.
-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7. 25. • 마감일자 : 2017. 9. 5.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17.5.8일)된 바,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회계감사기준위원회 및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 등에 대해 정비하기 위함
- 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 및 한국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제4조의2)
- 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이 위탁감리위원장 임명시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탁감리위원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의 해촉 요구권 신설(안 제4조의3)

1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7. 7. 25. • 마감일자 : 2017. 8. 4.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인천논현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2명, 경장 1명, 순경 4명, 6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112종합상황실 등 7개과를 2019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87명(경정 7명, 경감 27명, 경장 12명, 순경 36명, 7급 3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11.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7. 26. • 마감일자 : 2017. 8. 1.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허가 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하는 등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7. 26.

• 마감일자 : 2017. 9. 4.

-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공무원 의제조항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을 수행한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공연장 안전진단 위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함

이와 함께,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연 시작 전, 관객 대상 피난안내 의무화(안 제11조제3항 및 제43조 3항 1호 신설)

1) 공연자운영자는 공연장 내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 피난요령 등을 관객에게 주지시켜야 함

2) 피난안내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함

나.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인정범위 확대(제12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1) 등록한 지 매 3년이 되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정기 안전검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받는 안전검사는 법적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함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다. 공연장 안전진단 위탁기관 책임성 강화(안 제37조의2 및 안 제40조 제4호·제5호 신설)

1)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2)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대한 벌칙 신설

라.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관련 법적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13.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7. 26.

• 마감일자 : 2017. 8. 1.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허가 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하는 등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7. 26. • 마감일자 : 2017. 9. 4.
-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공무원 의제조항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을 수행한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공연장 안전진단 위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함
 이와 함께,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연 시작 전, 관객 대상 피난안내 의무화(안 제11조제3항 및 제43조 3항 1호 신설)
 - 1) 공연자운영자는 공연장 내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 피난요령 등을 관객에게 주지시켜야 함
 - 2) 피난안내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함
- 나.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인정범위 확대(제12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 1) 등록한 지 때 3년이 되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정기 안전검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받는 안전검사는 법적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함
 -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다. 공연장 안전진단 위탁기관 책임성 강화(안 제37조의2 및 안 제40조 제4호·제5호 신설)

- 1)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 2)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대한 벌칙 신설

라.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관련 법적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15.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7. 26. ● 마감일자 : 2017. 7. 31.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에 대한 국가차원의 상시 방역 전담체계 구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방역정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나급)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기구인 친환경축산팀은 폐지하되, 축산환경복지과를 신설하면서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가금유통, 무허가 축사 등 정책 담당인력 5명(5급 4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가축질병방역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부에 한시조직인 가축질병방역센터 3개소(김해·춘천·제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0명(5급 3명, 6급 3명, 7급 4명)을 증원하고, 사전 예방적 방역 감시 역량강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백신기술 연구,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강화 등을 위해 인력 45명(5급 2명, 6급 10명, 7급 20명, 8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9명)을 증원하면서, 그 중 6명(7급 2명, 연구사 4명)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일부 방역정책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면서 그에 따른 정원 21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0명, 7급 3명, 8급 1명, 사무운영 9급 2명)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조정하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규 개소에 따라 해외여행객의 동·식물·축산물 휴대검역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 휴대품검역2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3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14명, 7급 14명)과 탐지견 운

영 요원 5명(전문경력관 가급 1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전문경력관 다급 3명)을 증원하고, 검역탐지 및 동물계류검역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특수검역과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 1명으로 직급상향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명칭과 분장 사무를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용어의 정비 및 부서 간 사무분장의 조정,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의 조정, 2017년도 총액 인건비제 운영 계획에 따른 직급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7. 26. • 마감일자 : 2017. 9. 4.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5년 단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과 3년 단위 시행계획을 5년 단위 시행계획으로 통합하는 한편, 각 개별법에 따라 수립하고 있는 일부 유사 지방교통계획을 도시교통정비계획에 통합하도록 하고, 중소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쇠퇴 방지를 위하여 “교통시설 공급 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계획기간 단축 및 부문별 포함사항 추가 (안 제5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계획수립 단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함.

- 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도시교통정비 시행계획으로 일원화(안 제10조 및 현행 제8조 삭제)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시행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하되, 1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 4개 지방 교통계획을 도시교통정비계획에 통합 시 수립 의제(안 제 11조의2 신설)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보행교통개선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 4개 지방 교통계획을 도시교통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의제 처리토록 함.

라. 교통시설 공급 촉진구역 지정 근거 마련(안 제48조의2 신설)

도시의 쇠퇴를 방지하고 도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가 “교통시설 공급 촉진구역”을 지정하여 공동 주차장, 입체도로구역 개발 등 교통 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1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7. 27. • 마감일자 : 2017. 9. 5.

- 생태산업단지 구축·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생태산업단지 운영전담기관 확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취소 및 정기감독 등 재제조제품 사후관리 세부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7. 28. • 마감일자 : 2017. 8. 14.

-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4342호, 2016. 12. 2. 공포, 2017. 9. 1. 시행)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법률 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 6)
 - 1)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위반행위 회당 20 ~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함

2) 운전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위반행위 회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7. 7. 31. • 마감일자 : 2017. 9. 11.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시, 필요한 납입 자본금을 완화하여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시 필요 자본금 : (현행) 50억 원 → (개선) 20억 원 아울러, 창업보육센터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요건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담보 제공 또는 채무 보증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자본금 완화(제9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완화
-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담보 제공 또는 채무 보증 금지 규정명확화(제10조제4항제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으로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
- 다. 창업보육센터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요건 명확화 창업보육센터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요건 중 자격·실무경력 기준을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명확화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기사1급”을 “기사”로 변경

2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7. 31. • 마감일자 : 2017. 9. 11.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의약외품의 제조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에서 취득

한 학위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의약외품 제조업무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21.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7. 31.
- 마감일자 : 2017. 9. 11.

○ 현행 군인연금법 상 군인 재해보상 관련 규정을 군인재해보상법 으로 이관함에 따라 법 조문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공적연금 수급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부 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른 분법으로 법률 조문체계 재정비

1) 공무상요양비,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 등 현행 「군인연금법」상 군인 재해보상 관련 규정을 「군인재해보상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법률 조문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법률 조문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재정비함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연금제도에 적합한 체계로 재구성

나. 분할연금제도의 도입(안 제29조 ~ 안 제33조 신설)

1)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서는 이미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공적연금 수급자간 형평성 확보 및 재직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를 통해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또는 일시금을 균등분할 하고 재직 중 이혼한 경우에는 先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 시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안 제43조제2항 신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중

전에 감액된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

22.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7. 31.
- 마감일자 : 2017. 9. 11.

○ 가. 군인 재해보상 법규체제 정비

- 1) 공무상요양비,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 등 현행 「군인연금법」상 군인 재해보상 관련 규정을 「군인재해보상법」으로 이관
- 2) 군인 재해보상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정책 실현에 적합한 법률 조문체계를 구성

나. 공상 간부가 민간병원 이용시 공무상요양비 지원 확대(안 제19조, 안 제22조)

- 1)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공상 간부가 본인의 선택으로 민간 병원 이용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
- 2) 공상 간부가 본인의 선택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지원하여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

다. 장애보상금 제도 개편(안 제31조)

- 1) 장애보상금을 ‘개인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동일한 장애라 하더라도 계급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애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인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하여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함.
- 2) 장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전상’, ‘특수직무 공상’, ‘일반 장애’로 구분하여 전투 또는 위험직무 수행시 질병 부상을 입은 군인에 대해 장애보상금을 상향
- 3) 간부의 장애보상금 지급은 ‘전상’, ‘특수직무공상’인 경우로만 한정

라. 순직유족연금 지급 수준 상향 및 유족가산제 신설(안 제34조)

- 1) 단기 재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생활보호를 위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배율 폐지

2) 유족 수에 따라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순직유족연금을 상향하는 유족가산제 도입

마. 분할연금제도의 도입(안 제30조 신설)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상이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

2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7. 7. 31. • 마감일자 : 2017. 9. 11.

○ 통신환경 변화로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고령층(이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제공하려는 것임

○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근거 마련(안 제2조제3항)

1)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의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를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앤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로 한정

2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7. 8. 1. • 마감일자 : 2017. 8. 8.

○ 가. 육아휴직수당 지급수준 상향(안 제11조의3)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월별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 민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육아휴직수당 인상 내용을 공무원 수당규정에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일부직종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 개선(안 제15조)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을 상당계급 일반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함

2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8. 1. • 마감일자 : 2017. 9. 11.
- ‘16.1월 도시가스사업법이 도시가스배관 건전성관리 적용 대상 및 수행계획서 작성 기준, 제출시기, 이행, 결과 보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배관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자 및 배관[안 제27조의5제1항·제2항]
 - 배관건전성관리 적용 대상 사업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가스공사)로 규정
 - 배관건전성관리 적용 대상 배관은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
- 나. 배관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 시기[안 제27조의5제3항]
 - 수행계획서 제출시기는 제출해야 하는 가스배관시설이 최초로 발생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제출
 - 실행계획서는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가스배관시설이 발생되는 해에 제출
 - * 실행계획서: 수행계획서에 따른 배관별 세부 실행계획서
- 다. 수행계획서 심사 신청 및 심사결과 통보 절차[안 제27조의5제4항·제5항]
 - 사업자가 수행계획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신청 시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 첨부 서류 및 심사 기간(60일) 등 규정
- 라. 수행계획서 이행결과 보고 주기 및 방법[안 제27조의5제6항]
 - 사업자는 수행계획서 이행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실행계획서를 제출한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에 이행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
- 마. 수행계획서 이행결과 확인 주기[안 제27조의5제7항]
 - 사업자의 수행계획서 이행결과 확인 시기는 실행계획서를 제출한 해

부터 5년 이내로 규정

바. 수행계획서 이행결과 확인 신청 및 결과 보고(통보) 절차[안 제27조의5제8항·제9항]

- 사업자가 수행계획서 이행결과에 대한 확인 신청 시 신청서 양식과 신청기한 규정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행확인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규정

사.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심사기준 및 이행확인기준[안 제27조의5제10항, 별표 7의4]

-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심사기준 및 이행확인기준을 별표 7의4에 정함

2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8. 1. • 마감일자 : 2017. 9. 11.

- ‘16.1월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시가스배관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 이행, 결과 보고 등 의무와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함

27.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8. 1. • 마감일자 : 2017. 8. 14.

- 가. 국민경제자문회의 당연직위원 변경(안 제2조제1항제1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일자리 관련 자문기능 강화에 따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당연직위원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함.

- 나. 지명위원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항제3호)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편으로 보좌관이 신설됨에 따라 보좌관도 지명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자문회의의 지명위원 범위를 확대함.

- 다. 분야별회의 종류 변경(안 제3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기존 분야별회의를 거시경제회의,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대외경제회의로 변경하고, 경제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경제정책회의를 신설함
 라. 분야별회의의 구성원 범위 확대 (안 제3조의3제1항)
 분야별회의가 확대됨에 따라 회의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게 의장이 분야별회의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위원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전체회의의 당연직위원으로 확대함.

2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8. 2. • 마감일자 : 2017. 9. 11.
-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800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 조문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별지 서식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동의서 서식 일원화(안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토지소유자의 편리한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하여 사업지구지정 신청 동의서(또는 동의철회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서(또는 동의철회서) 서식을 일원화 함.
- 나. 용어 변경(안 제4조, 제8조, 제10조)
 ~법 제2조제4호 개정에 따라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개정에 따라 “지적확정조서”를 “지적확정예정조서”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개정에 따라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지상경계점등록부”로 변경함.
- 다. 별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서식, 제8호 서식, 제15호서식)
 법 제18조제2항 개정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지상경계점등록부”로 변경하는 등 서식을 개정함.

2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8. 2. • 마감일자 : 2017. 9. 11.

-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800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등록 등의 자료수집 근거 마련 및 조정금 분할납부 방법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민등록 등의 자료 수집 근거(안 제5조제3항 신설)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

- 나. 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안 제8조제3호)

사업지구 필지 수 증감은 100분의 20 이내이나, 면적 증감이 100분의 20 이상일 경우에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 없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을 대상필지 또는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에서 대상필지와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으로 변경함.

- 다. 경계설정합의서(안 제10조의2 신설)

합의경계 설정 시 토지소유자의 합의 의사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함.

- 라. 시·군·구 지적재조사특별회계 근거(안 제12조제2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금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시·군·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금 징수액을 조정금 지급액으로 사용함으로써 세출예산 편성 부담을 경감하고 회계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함.

- 마. 조정금 분할납부방법(안 제13조제1항)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정금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의 범위로 연장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 개정(안)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조정금 분할 납부방법을 현행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3회 이내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 분할납부로 변경함.

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6조의2 신설)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토지소유자 동의에 관한 사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8. 2. • 마감일자 : 2017. 9. 11.
- 상이등급 7급의 상이등급기준에 군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팔·다리 노출된 면에 추상이 있는 사람을 신설함으로써 이들이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도록 하는 것임.

3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8. 2. • 마감일자 : 2017. 9. 11.
-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등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자격 취득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격증을 출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상장형 자격증’ 서식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을 개선함

32.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7. 8. 2. • 마감일자 : 2017. 8. 14.
- 각종 인사발령 서식과 용어를 국가공무원 인사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3.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7. 8. 2.
- 마감일자 : 2017. 8. 14.

- 임용일자 외의 소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 기간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며,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4.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7. 8. 2.
- 마감일자 : 2017. 8. 14.

- 경력 평정에 산입하는 기간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5.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7. 8. 2.
- 마감일자 : 2017. 8. 14.

- 승진시험 부정행위자의 승진심사대상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승진심사의 결과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8. 3.
- 마감일자 : 2017. 9. 12.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재가입하여 노령연금 급여수준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4693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또는 재지급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금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를 명확히 규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7.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8. 3. • 마감일자 : 2017. 8. 10.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제3항과 관련한 별지 제12호,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3호 서식이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이 아닌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으로 표기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3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8. 3. • 마감일자 : 2017. 8. 7.
- 법의 목적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명확화하고 관세사의 사명을 신설하며, 관세사의 결격사유와 품위 유지 의무 등을 타 자격사 수준으로 보완하는 등 관세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며, 관세법인 제도 운영규정을 일부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세사법의 목적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 등을 관세사의 사명으로 신설함.
- 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변호사·관세사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관세사의 직무로 규정함.

- 다. 관세사의 결격사유를 ‘관세사법·관세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던 것을 타 자격사와 동일하게 ‘법률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하고, ‘징계처분’ 뿐만 아니라 ‘탄핵’에 의하여 파면·해임된 경우도 추가함.
- 라. 합동사무에 대해 소속 관세사 수 범위 내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각 사무소에는 그 소속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도록 규정함.
- 마. 관세사의 적정 보수청구 근거 및 보수 외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신설함.
- 바. 타 자격사와 동일한 수준의 품위 유지·진실은폐 금지·회칙 준수 의무를 관세사의 의무로 추가함.
- 사. 관세법인은 관세청에 등록한 날 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관세법인 사원의 임의 탈퇴를 허용하며, 당연 탈퇴 사유에 ‘사망한 경우’ 및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추가함.

3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8. 3. • 마감일자 : 2017. 8. 7.
- 관세환급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대상수출용원재료를 인정하도록 하고,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 추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8. 3. • 마감일자 : 2017. 8. 7.
- 관세조사 시 납세자권리현장 교부 대상 범칙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복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를 정비하며,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를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범위를 확대하며, 관

세체납에 대한 연대 납세의무를 강화하고,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 가격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8. 3. ● 마감일자 : 2017. 8. 7.
- 전통주의 제조면허 추천자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키고, 주류제조면허 및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를 추가하며, 맥주의 재료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8. 3. ● 마감일자 : 2017. 8. 22.
- 주권 또는 지분 양도시 원천징수되지 않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을 조정하여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주권 또는 지분 양도시 원천징수되지 않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함

4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8. 3. ● 마감일자 : 2017. 8. 22.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양국에서 이중 비과세되는 혼성금융상품 비용공제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다국적기업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차입거래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는 제도를 신설함.
나. 다국적기업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가 양국에서 이

중비과세 되는 경우 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제도를 신설함.

다.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산출 방법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허용함.

라.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인 독립기업원칙을 반영하고 정상가격 사전 승인 청구기한을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에서 개시일의 전일로 변경함으로써 이전가격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4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8. 3. • 마감일자 : 2017. 8. 22.

○ 유연탄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8. 3. • 마감일자 : 2017. 8. 22.

○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보충적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탁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하며, 제재 규정 합리화를 위해 가산세 규정을 보완·신설하고,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매대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8. 3. • 마감일자 : 2017. 8. 22.

○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추가하고 연부연납을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완하

고, 편법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며,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8. 3. • 마감일자 : 2017. 8. 22.
-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2,00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합병·분할 시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며, 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소규모법인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8. 3. • 마감일자 : 2017. 8. 22.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아동수당 지급에 맞추어 중복되는 일부 자녀세액공제를 정비하며,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파생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합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8. 3. • 마감일자 : 2017. 8. 22.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제도의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하며,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 합병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며, 중·저소득 근로자 지원과 투자·고용·상생 협력 촉진을 위해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을 확대하며, 서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8. 3. • 마감일자 : 2017. 8. 22.

- 사전통지 기간의 연장,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제한, 조사결과의 구체적 통지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제도를 보완하고,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의 청구 등을 심의·의결하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8. 3. • 마감일자 : 2017. 9. 12.

-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협의, 수용과 더불어 개별 합의, 경매, 공매를 통

하여도 취득할 수 있도록 취득방식을 다양화하고, 개별 합의에 의한 매수가격을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등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17.4.18, 법률 제14794호)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실태조사 주기 개선(안 제3조제6항)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문기관(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등)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종전에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별 합의에 의한 매수가격 기준 마련(안 제10조제1항 신설)

1)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그 소유자와 개별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매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는 개별 합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함

2) 평가금액의 산정 방법은 토지의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사용제한 상황 등을 반영하고, 건물의 경우 착공시점의 원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 평가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 제10조제2항)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취득으로 인하여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등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토지·물건 및 권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용수익 제한 등을 반영한 손실보상의 기준을 정함

5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8. 4.
- 마감일자 : 2017. 8. 14.

○ 육아휴직 수당 인상을 통해 육아휴직 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자녀출산을 장려하고 수의직 공무원 충원을 위한 의료업무수당 인상 및

임기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단가 인상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아빠의 달’ 수당 확대(안 제11조의 2)

‘17.7.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아빠의 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월 봉급액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안 제11조의 2)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최초 3개월 동안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월별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함.

다.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개선(안 제15조)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라. 수의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별표9)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충원이 어려운 시·군에 한하여 의료업무수당을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

5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8. 4. • 마감일자 : 2017. 9. 17.

○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One-Strike out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처분 기준정비 및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

5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인)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8. 4. • 마감일자 : 2017. 8. 21.

○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나, 현행 법 체계로서는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한 효과적 논의가 곤란한 상황

임. 이에 국가 에너지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인 “에너지위원회”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의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8. 4. • 마감일자 : 2017. 9. 13.
-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행위가 있는 기관에 대해 시설폐쇄명령 혹은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215호, '16.5.29. 개정, '17.5.30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위반시 처분 기준(별표 2)
법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위반시 처분 기준을 마련함

56.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8. 14. • 마감일자 : 2017. 9. 13.
-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215호, '16.5.29. 개정, '17.5.30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무·회계 규칙을 정하려는 것임.

5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8. 14. • 마감일자 : 2017. 8. 24.

- 최근 신규주택시장으로 단기 투자수요가 집중되어 청약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주자 저축가입 기준, 가점제 적용 주택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민영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우선 적용(안 제26조제2항)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가점제를 적용하여 선정하는 경우 착오 또는 고의로 가점을 높게 표시한 사람이 당첨되고 사실대로 입력한 청약신청자는 당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 추첨의 방식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을 우선 가점제를 적용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하고자 함
- 나. 제1순위 자격요건 강화(안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15.2월에 1순위 자격요건인 입주자저축가입기준이 가입 후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완화되었으나, 최근 주택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하여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함
- 다. 가점제 적용 주택수 비율 상향(안 제28조제2항 및 제4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실수요자인 무주택자가 더 많이 당첨될 수 있도록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에 우선 적용되는 가점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 라.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안 제28조제6항)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의 경우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6개월마다 당첨 후 전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을 제한하여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58.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8. 4.
- 마감일자 : 2017. 9. 13.

- 통행료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차량 조건 중 배기량 제한이 있으나, 이는 석유연료 차량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그간 전기차 및 수소차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 했음. 이에, 전기차 및 수소차를 별도의 감면 대상 차량으로 규정하여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위해 7인승 ~ 10인승 승용자동차가 6인승 이하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 통행료 감면 조건 중 차량 승차인원 및 배기량 제한으로 감면대상이 되지 못 했으나, 구조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적용하여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5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8. 4. • 마감일자 : 2017. 9. 13.
-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기준을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0.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8. 4. • 마감일자 : 2017. 9. 13.
-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기준을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